

## 「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」공포

### - 방사선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-

나노, 반도체, 정보통신, 유전공학 등 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방사선이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용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「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」이 12월26일 법률 제6814호로 공포되었다.

방사선이용분야는 의료, 농업, 공업 등 이용규모가 매우 다양하고, 국민 생활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, 투자효과도 매우 높아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이용연구 와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이에 따라,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이용기술(RT : Radiation Technology)개발을 촉진하고,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한 법적·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.

이번에 공포된 「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」은 5장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선이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, 방사선이용·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 개발, 방사선이용 관련 산업 및 학회·단체의 육성·지원, 방사선연구 및 이용 관련 기반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.

동 법은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의 제정이 끝나는 200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.

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우선 방사선기술 (Radiation Technology :RT)개발계획('02-'06)을 수립하여 방사선이용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

앞으로, 법령 시행과 국가 시책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총 매출액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%에서 2010년까지 30%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##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고시

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5일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 고시하였다. 이는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-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한 것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맞추어 제정하였다.

동 고시에서는 내부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방법, 측정대상, 측정절차,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의 측정 방법은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.

이 경우 사업자는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 중 사업소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법으로 택일할 수 있으며 측정대상자의 연간예탁유효선량을 당해 연도 4/4분기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## 2002년도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지원과제 공모(2차)

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인적기반 확충을 통해 21세기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흥 기반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모한다.

### 1. 공모 내용

사업분야	사업내용	지원인원
국제공동학술 연구협력협약	선진국 우수대학의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 관련 학과 또는 기관과 국제공동학술연구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석·박사과정의 우수인력을 1~2년간 해외에 파견하여 공동연구의 수행 또는 학점 이수지원	6명
	국내 이공계대학 우수인력(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)이 선진국 우수대학의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의 학위과정을 수학하고자 할 때에 이를 지원	
전문인력파견 국제협력협약	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해외의 관련 국제기구, 기관 등과 국제전문인력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소속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연구과제 수행 및 연수 기회를 갖게 하여 첨단기술 도입 및 국제기구 진출 등을 장려	1~2명
학부생 해외연수 지원	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선진국 우수대학 관련학과 또는 기관 등과 학부생연수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학부생을 파견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연수·시찰 또는 학점이수 기회를 제공	5명

### 2. 지원내용

- 가. 국제공동학술 연구협력협약 분야
  - 체재비 및 왕복항공료 등 지원 (\$30,000/년 이내)
- 나. 전문인력파견 국제협력협약 분야
  - 체재비 및 왕복항공료 등 지원 (\$30,000/년 이내)
- 다. 학부생 해외연수 지원 분야

- 체재비 및 왕복항공료 등 지원(지급기준에 따라 기간별 월액 지급)

### 3. 신청 방법 등

#### 가. 신청절차

-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신청기관(대학, 연구소, 산업체 등)에 제출
- 신청기관은 각 지원자의 신청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일괄 신청함(지원자 개인의 개별접수는 받지 않음)
- 신청기관은 지원자가 복수인 경우 신청서 작성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신청 (단, 국제공동학술협력협약분야는 해당 없음)

#### 나. 신청기간

- 국제공동학술 연구협력협약, 전문인력파견 국제협력협약, 학부생 해외연수 지원 분야
- 사업기간(1년)중 일정에 따라 4회 공모
- ※ 2차공모의 접수마감은 2003년 1월 30일 (목) (세부 일정은 “사업안내서” 참고)

#### 다. 접수 및 문의 안내

- 접수처 : (우)137-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 B/D 8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 인력양성사업 담당  
TEL : (02) 589-2278 FAX : (02) 589-2280  
E-MAIL : wskang@kistep.re.kr
- 문의처 :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인력양성 담당(☎ 02) 503-7646~48)  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 인력양성담당(☎ 02) 589-2278)

### 4. 평가, 선정(선발) 및 발표

#### 가. 평가

- 분야별 수행계획서 등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

#### 나. 선정

-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점순위별로 선정 지원

#### 다. 발표

-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와 함께 주관기관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

### 5. 기타 참고사항

사업의 관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홈페이지 (<http://nuclear.kistep.re.kr>)”에서 2002년도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,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운영 및 관리요령,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과학기술부 공고 제2002-148호〉